



개인형 이동장치(전동 킥보드 등) 이용 관련 주의 사항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최근 개인형 이동장치(전동 킥보드 등)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. **도로교통법상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초·중 학생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불가하며, 16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소지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.** 가정에서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우리 자녀들이 개인형 이동장치(전동 킥보드)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.

<개인형 이동장치(전동 킥보드 등) 관련 최근 언론보도 사항>

- ◆ 2명 올라탄 킥보드, 위험천만 주행... 경적울리니 되려 욕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녀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차량앞에 곡예 운행 중 경적울려 주의 하자 욕설 (SBS, 2023.12.05)
- ◆ 경남경찰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 단속 경남 경찰은 지난달 13일부터 30일 까지 이륜차 및 전동킥보드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 실시로 198건 적발 및 조치 (연합뉴스, 2023.12.05.)

【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】

구분	내용
어린이(13세 미만) 운전 금지	○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 처벌 (과태료 10만원)
*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(* 16세 이상 취득 가능)	○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
안전모(헬멧 착용)	○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
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	○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범칙금 4만원
자전거도로 통행 원칙	○ 보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○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, 도로 가장자리로 통행 ○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,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서 전동 킥보드를 밀면서 횡단

2024년 4월 25일

인천 신촌초등학교장